

광주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가단5389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
사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91,6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9. 6. 24. 처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을 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9. 6. 26.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같은 날(2019.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44,000,000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D 주식회사, 채무자 A)의 피담보채무 29,441,885원¹⁾ 및 채권최고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D 주식회사, 채무자 A)의 피담보채무 11,266,446원²⁾ 이 각 변제되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은, 한국주택금융공사(대출취급기관 D)에 29,410,380원 및 11,249,157원의 대출금채무³⁾, D 주식회사에 7,130,000원 및 12,140,000원의 대출금채무⁴⁾, 주식회사 E에 100,000,000원 및 49,000,000원 및 49,999,608원의 보증채무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74,790,000원의 보증채무⁶⁾ 등이 있어 합계 333,719,145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가액 합계 167,808,000원 상당의 토지(순천시 F 전 1,074㎡ 및 G 전 1,415㎡)가 있었다.

라. A은 2019. 9. 27.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4. 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광주지방법원 2019개회515118). 이후 A은 2020. 9. 11.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광주지방법원 2020하단50516 및 2020하면50516) 2020. 12. 11.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2021. 5. 14.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2021. 5. 28.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됨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으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2021. 5.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21. 6.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주식회사 E,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인대상행위의 성립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A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고, 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A의 처형인 점, A이 현재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차인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나 부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재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29,441,885원 및 11,266,44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가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2021. 5.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1. 6. 2.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 대금인 80,000,000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인권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39,291,669원(= 80,000,000원 - 29,441,885원 - 11,266,4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22.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화

[별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남 광양시 아파트 동[도로명 주소] 전남 광양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84.96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전남 광양시 대 16542m²전남 광양시 대 16435.3m²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32977.3분의 46.53

1) 원금 29,410,380원 + 이자 31,505원

2) 원금 11,249,157원 + 이자 17,289원

3) 이 법원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피고가 2019. 6. 26.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2건을 말소하면서 상환한 채무 2건의 원금액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6)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